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3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11. 19. 김한규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2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3. 9.) 상정 · 제안설명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6. 3. 11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
반영폐기)
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3. 12.) 상정 · 소위심사
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한규의원)

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

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, 전통시장 구역 변경(확대·축소)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,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,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,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개정안은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경미한 구역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안 제10조 신설).

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가 마련되면, 인정 절차를 반복하여야 함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는 기준과 절

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인바, 먼저 구역변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·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한편, 개정안은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전통시장의 인정권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인 점을 고려하여 조례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김원이 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오세희의원, 김한규의원,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.

대안의 주요내용은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

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6. 심사결과

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